

사립대학재정통계설명자료

2023. 12.



☐ 통계 개요

| 승인번호 | 통계명칭 | 통계종류 |
|--------|----------|------|
| 418001 | 사립대학재정통계 | 일반통계 |

☐ 보고연혁

| 구분 | 내용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보고연혁 | 최초작성년도 : 2014 |
| | <주요연혁> |
| | 2008.01.18 : 교육정보공시 총괄 관리기관 및 항목별 관리기관 선정 |
| | 2013.10.15 :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 |
| | 2013.11.11 : 사립대학재정통계 작성승인 |
| | 2013.11.24 : 사립대학재정통계 작성변경 승인 - 작성사항 항목 추가(주요비율 분석 등) |
| | 2015.01.13 : 2014 사립대학재정통계 공표 |
| | 2016.01.07 : 2015 사립대학재정통계 공표 |
| | 2016.12.28 : 2016 사립대학재정통계 공표 |
| | 2017.11.30 : 사립대학재정통계 결과표 변경 승인 - 지표 해설 변경, 결과표 변경 등 |
| | 2017.12.29 : 2017 사립대학재정통계 공표 |
| | 2018.12.06 : 사립대학재정통계 통계작성 변경승인 - 결과표 변경 및 지표명 수정 등 |
| | 2018.12.31 : 2018 사립대학재정통계 공표 |
| | 2019.03.21 : 사립대학재정통계 통계작성 변경승인 - 결과표 추가 및 지표명 수정 등 |
| | 2019.12.31 : 2019 사립대학재정통계 공표 |
| | 2020.12.31 : 2020 사립대학재정통계 공표 |
| | 2021.04.01 : 사립대학재정통계 통계작성 변경승인 - 결과표 추가 및 지표명 수정 등 |
| | 2021.12.31 : 2021 사립대학재정통계 공표 |
| | 2022.12.30 : 2022 사립대학재정통계 공표 |
| | 2023.03.23 : 사립대학재정통계 통계작성 변경승인 - 결과표 추가 |
| 2023.12.28 : 2023 사립대학재정통계 공표 | |

□ 조사 목적 및 활용

| 구분 | 내용 |
|----------------|--|
| 보고목적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립대학의 재정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·활용하여 고등교육 정책수립 및 다양한 연구·조사 활동 등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 제공 및 정책방안 제시 ○ 사립대학 재정운영에 관한 통계자료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투명성을 확보하여 사립대학 재정에 대한 대국민의 이해도 제고 |
| 통계(활용) 분야 · 실태 | 교육 |

□ 작성유형

| 구분 | 내용 |
|------|------|
| 작성유형 | 보고통계 |

□ 조사대상

| 구분 | 내용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보고대상 범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및 동법 제30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 ○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의한 산학협력단 ○ 「사립학교법」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 |
| 보고대상 지역 | 전국 |
| 보고단위 및 보고대상 규모 (2023년 기준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결산) 사립대학 192개교, 전문대학 124개교 ○ (산학협력단) 사립대학 149개교, 전문대학 122개교 ○ (대학 교육시설) 사립대학 264캠퍼스, 전문대학 137캠퍼스 ○ (수익용기본재산) 대학법인 188개, 전문대학법인 99개 |
| 적용분류 | 해당 없음 |

□ 보고항목

| 구분 | 내용 |
|------|--|
| 보고항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학 및 학교법인 예·결산 ○ 산학협력단 예·결산 ○ 재무 주요 지표 통계 현황 ○ 대학 교육시설 현황 ○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 |

□ 공표

| 구분 | 내용 |
|------------|---|
| 공표주기 | 1년 |
| 공표시기 | 작성기준년도 12월 |
| 공표범위 | 전국 |
| 공표방법 및 URL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언론보도(보도자료) ○ 전산망 등록(https://support.kasfo.or.kr) ○ 간행물 발행(사립대학재정통계연보) |

□ 보고기간

| 구분 | 내용 |
|-----------------|---|
| 보고대상기간 및 보고기준시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사립대학 및 산학협력단 예·결산) 3월1일~익년 2월 말 ○ (대학교육시설) 4월 1일 ○ (수익용기본재산) 4월 1일 |
| 보고기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사립대학 및 산학협력단 예산) 2월 ○ (사립대학 및 산학협력단 결산) 5월 ○ (대학교육시설) 4월 ○ (수익용기본재산) 6월 |
| 조사주기 | 1년 |
| 계속여부 | 계속통계 |

□ 자료이용 시 유의사항

| 구분 | 내용 |
|------------|---|
| 자료이용시 유의사항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회계연도 결산일 기준 미제출된 대학의 자료는 반영하지 않음 ○ 자료 수치는 반올림 처리 등으로 인하여 세부항목의 계와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○ 본 간행물의 주요 비율 산정은 재정자료를 토대로 산출한 수치이므로, 타 기관의 유사 동일항목과 산출방식이 다를 수 있음(주요 비율별 공식 참고) |

□ 용어 정의

| 구분 | 내용 |
|--------------|--|
| 설립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국립) 국가가 설립·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가 해당 ○ (공립) 지방자치단체가 설립·경영하는 공립학교가 해당 ○ (사립) 학교법인이 설립·경영하는 사립학교가 해당 |
| 학종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대학)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설립된 학교 중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및 제30조에 따른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, 원격대학, 기술대학, 각종학교 및 대학원대학이 아닌 모든 고등교육기관 ○ (전문대학)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2년 이상 3년 이하의 수업연한을 두는 고등교육기관 ○ (산업대학) 산업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학술, 전문지식 및 기술교육을 제공하는 고등교육기관 ○ (대학원대학)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원만을 두는 고등교육기관 |
| 학생규모 (재학생기준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사립대학) 5천명 미만, 5천명 이상, 1만명 미만, 1만명 이상 ○ (사립전문대학) 2천명 미만, 2천명 이상, 4천명 미만, 4천명 이상 |
| 교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교지경계선내 및 20km 이내에 위치한 학교법인 소유의 교육·연구 목적 토지(시설 결정·미결정지 포함) ※ 농장·학술림·사육장·목장·양식장·어장 및 약초원 등 실습지와 「대학설립·운영규정」 제7조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에 해당하는 용지는 제외 |

| 구분 | 내용 |
|---------|---|
| 교사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교지경계선내 위치한 학교법인 소유의 교육용 건물(교육기본+지원+연구시설) ※ 교지경계선으로부터 20km 이내 학생기숙사 포함 |
| 수익용기본재산 | <p>학교법인의 수익창출을 위한 기본재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학교법인은 대학의 등록금 부담완화 및 재정구조의 다각화를 위해 수익용 기본재산을 운용하여야함 ※ 학교법인은 「대학설립·운영규정」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고 수익을 창출해야 하며, 발생한 소득의 80%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대학운영경비로 충당하여야함 |